

방 송 통 신 위 원 회

심 의 · 의 결

안건번호 제2015 - 12 - 52호 (사건번호 : 201503조사045~073)

안 건 명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

- 피 심 인 ① [REDACTED]
② [REDACTED]
③ [REDACTED] 22개 유통점
④ [REDACTED]
⑤ [REDACTED]
⑥ [REDACTED]

의결연월일 2015. 3. 26.

주 문

1. 피심인①은 영업장에 사전승낙서를 즉시 게시하여야 한다.
피심인②는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공시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고, 영업장에 사전승낙서를 즉시 게시하여야 한다.
피심인③~⑤는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공시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.

2. 피심인①~⑤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피심인의 사업장 정문 출입구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 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7일간(휴업일 제외) 공표하여야 한다.

3. 피심인①~⑤는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4.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.

가. 피심인①() : 과태료 1,000,000원

나. 피심인②() : 과태료 2,500,000원

다. 피심인③(22개 유통점) : 각 과태료 1,500,000원

라. 피심인() : 과태료 4,500,000원

마. 피심인⑤() : 각 과태료 7,500,000원

바. 피심인⑥() : 각 과태료 5,000,000원

사. 납부기한 : 과태료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

아. 납부장소 :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

※ 피심인의 유통점별 과태료 부과내역은 【붙임】 참조

I. 사실조사 결과

1. 조사 대상

- 조사대상 기간('14.10.1.~'15.2.17.) 중 국민신문고 등으로 '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(이하 '단말기유통법'이라한다) 위반행위 신고 또는 제보를 받은 43개 대리점·판매점

2. 행위사실

- 방송통신위원회는 피심인에 대하여 단말기유통법 위반사항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,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음
 - 26개 유통점(피심인②~⑤)은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에 추가로 100분의 15의 범위를 더한 금액보다 초과한 지원금(이하 '과다 지원금'이라한다)을 지급하였음
 - 2개 판매점(피심인①,②)은 이동통신사업자의 판매점 선임에 대한 사전승낙을 받고 그 사실을 영업장에 게시하여야 하나, 사전승낙서를 게시하지 않고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 영업을 하였음
 - 2개 판매점(피심인⑥)은 현장조사 시 지원금 지급 관련 장부·서류를 제출하지 않고, 조사관의 USB 탈취 시도 및 컴퓨터 전원 차단 등 조사를 거부·방해하였음
- ※ 피심인의 유통점별 위반내역은 【붙임】 참조
- 방송통신위원회는 2015년 3월 12일 '행정처분 사전통지' 공문을 통하여 피심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였음

II. 위법성 판단

1. 관련법 규정

- 단말기유통법 제4조제5항은 유통점이 공시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추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
- 같은 법 제8조제3항은 판매점이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서를 영업장에 게시토록 하고 있음
- 같은 법 제13조제2항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소속공무원에게 대리점·판매점 등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음

< 단말기유통법 근거 조항 >

제4조(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) ⑤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제3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.

제8조(판매점 선임에 대한 승낙) ③판매점은 제1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표시하여 영업장에 게시하여야 한다.

제13조(사실조사 등)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이동통신사업자(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), 대리점,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의 사무소·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, 서류,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.

2. 위법성 판단

- (지원금 과다지급) 피심인②~⑤가 일부 이용자에게 과다 지원금을 지급한 행위는 단말기유통법 제4조제5항을 위반한 것임
- (사전승낙제 위반) 피심인①,②가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서를 미게시하고 영업을 한 행위는 단말기유통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한 것임
- (사실조사 방해) 피심인⑥이 지원금 지급 관련 장부·서류,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지 않는 등의 행위는 단말기유통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·방해한 것임

Ⅲ. 시정조치 명령

1. 위반행위의 중지

단말기유통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라 피심인①은 사전승낙서를 게시하지 않고 영업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. 피심인②는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공시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고, 사전승낙서를 게시하지 않고 영업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. 피심인③~⑤는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공시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.

2.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

피심인①~⑤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피심인의 사업장 정문 출입구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 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7일간(휴업일 제외) 공표하여야 한다.

< 공표문안 유형 1(피심인 ③,④,⑤) >

○○○(유통점명)은 ‘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’
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



○○○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공시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‘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위반행위 즉시중지 등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.

2015년 4월 00일

○○○(유통점명) 대표자 ○○○

※ 공표문 크기 A2(42cm × 59.4cm), 활자크기 2.0cm×2.5cm이상

< 공표문안 유형 2(피심인②) >

○○○(유통점명)은 ‘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’
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



○○○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공시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였고, 이동통신 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영업장에 게시하여야 하나 이를 게시하지 않는 등 ‘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위반행위 즉시중지 등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.

2015년 4월 00일

○○○(유통점명) 대표자 ○○○

※ 공표문 크기 A2(42cm × 59.4cm), 활자크기 2.0cm×2.5cm이상

< 공표문안 유형 3(피심인①) >

○○○(유통점명)은 ‘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’
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



○○○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이동전화서비스 영업을 위해서는 이동통신 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영업장에 게시하여야 하나 이를 게시하지 않는 등 ‘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위반행위 즉시중지 등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.

2015년 4월 00일

○○○(유통점명) 대표자 ○○○

※ 공표문 크기 A2(42cm × 59.4cm), 활자크기 2.0cm×2.5cm이상

3. 시정명령 이행결과의 보고

피심인①~⑤는 단말기유통법 제14조제2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사업장에 게시한 공표문의 사진 제출 등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IV. 과태료 부과

피심인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제1항, 제3항,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[별표 3]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기준금액

단말기유통법 시행령 [별표 3]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을 적용한다.

< 과태료 부과기준 >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구분	과태료 금액(만원)			
			1회 위반	2회 위반	3회 위반	4회 이상 위반
1. 법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시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 경우	법 제22조 제3항제3호	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	100	300	600	1,000
		대규모유통업자	500	1,500	3,000	5,000
2. 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표시하여 영업장에 게시하지 않은 경우	법 제22조 제4항제6호	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	100	300	600	1,000
		대규모유통업자	500	1,500	3,000	5,000
3.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	법 제22조 제1항		500	1,500	3,000	5,000

2. 추가적 가중

단말기유통법 시행령 [별표 3]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, 사업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의 2분의 1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, 과다 지원금을 지급한 26개 유통점에 대하여는 위반 건수가 2건 이상인 점 등의 사유로 50%를 가중한다.

3. 최종 과태료

- 과다 지원금을 지급한 피심인③(22개 유통점)에게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 1,000,000원에 50%를 가중하여 1,500,000원을 각각 부과한다.
- 과다 지원금을 지급한 '대규모유통업자' 피심인⑤(2개 대리점)에게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 5,000,000원에 50%를 가중하여 7,500,000원을 각각 부과한다.
- 과다 지원금을 지급한 피심인④(1개 판매점)에게 2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 3,000,000원에 50%를 가중한 4,500,000원을 부과한다.
- 과다 지원금을 지급하고, 사전승낙제를 위반한 피심인②(1개 판매점)에게 각 1,000,000원의 과태료와 과다 지원금 지급 위반 과태료의 50%를 가중하여 2,500,000원을 부과한다.
- 사전승낙제를 위반한 피심인①(1개 판매점)에게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 1,000,000원을 부과한다.
- 조사를 거부·방해한 피심인⑥(2개 판매점)에게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 5,000,000원을 각각 부과한다.

※ 피심인의 유통점별 과태료 부과내역은 【붙임】 참조

V.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

피심인①~⑤는 위 시정조치 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,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,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.

피심인①~⑥은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,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

VI. 결론

상기 피심인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4조(시정 명령) 및 제22조(과태료)에 따라 “주문”과 같이 결정한다.

방송통신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.

2015. 3. 26.

방 송 통 신 위 원 회	위 원 장	최 성 준	
	부위원장	허 원 제	
	위 원	김 재 홍	
	위 원	이 기 주	
	위 원	고 삼 석	